

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. 8. 23 선고 2022가단3273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
리인 B

피 고 주식회사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율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재상, 배상운, 서안교

변 론 종 결 2023. 8. 9.

판 결 선 고 2023. 8. 23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주식회사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대하여
2021. 8. 2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주식회사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
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1. 8. 2. 접수 제4308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
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2. 4. 19. 주식회사 A(이하 ‘이 사건 회사’라 한다)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1. 8. 2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,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1. 8. 2.접수 제4308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

나.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22. 11. 11. 대구지방법원 2022간회합1020호로 간이회생신청을 하였고, 2022. 12. 22. 위 법원으로부터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.

다. 이 법원은 2023. 5. 30.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관리인인 B을 이 사건 회사의 소송수계인으로 정하여 속행명령을 발령하였다.

라. 한편,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간이회생 사건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폐지되거나 종결되지 않고, 계속 진행 중이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

가. 관련 법리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이하 ‘채무자회생법’이라 한다) 제105조, 제113조 등에 의하면,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고, 법원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,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.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회생절차의 성격,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,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관리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,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을

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(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다37141 판결 등 참조).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적법한 수계적격이 있는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, 소송을 수계한 관리인은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.

나. 구체적 판단

위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,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 소송수계인은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를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을 행사하는 취지로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.

3. 결론

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하석찬